47 - 서비스업 종사자의 돌발성 특발성 난청

성별	여	나이	36세	직종	계산원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이○○은 2008년 10월 1일 서비스업종인 M마트에 입사하여 계약직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후 다음날 10월 11일 개인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2008년 10월 1일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 행사 때 캐비넷 반 정도 크기의 스피커가 앞쪽에 1~2개, 다른 쪽에 1~2개 등 2~4개 정도가 사용되었고 계산원팀의 자리가 스피커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스피커의 소음을 측정하였다. 5m 거리에서의 스피커의소음측정결과 최고치 측정값은 125.2 dB(A)이었다. 7m 거리에서의 스피커의소음측정결과 최고치측정값은 122.7 dB(A)이었다. 체육행사 최소 4시간 이상동안 95 dB(A) 이상인 평균 97 dB(A)의소음에 노출되었고 음악의 종류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간헐적으로 충격음 120 dB(A) 이상의 최고음에 노출될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으며 성인병 질환 등 기저 질환도 없다. 2008년 10월 1일 입사 후 체육행사(10월 10일) 다음날 10월 11일 이명과 이통으로 개인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K의료원에서 7일간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받았으나 호전없어, A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았다. 2005년, 200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 정상 진단을 받았다.

4. 결론

이ㅇㅇ의 돌발성 특발성 난청은

-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며, 일반검진에서 청력검사상 정상 이었으며,
- 귀마개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으나, 소음측정결과 및 업무의 특성상 평균 소음 노출수준과 노출기간이 청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한 90 dB(A)이 상의 소음강도가 있었으며,
- 돌발성난청의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으나 소음노출직후 발생하였고 다른 위험요인에의 노출근거가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